

1

지방세 특례 정의 규정 명확화 등(법 §2①5의2·6, §4① §75의3, §80의2)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 신 설 >	<input type="checkbox"/> 인구감소지역 정의 신설(§2①5의2)
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세 특례 정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율의 경감, 세액감면, 세액공제, 과세표준 공제(<u>중과세 배제,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</u>) 	<input type="checkbox"/> 정의 규정 명확화(§2①6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율의 경감, 세액감면, 세액공제, 과세표준 공제, <u>중과세 배제,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 등</u>
<input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의 <u>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(지방세 감면)</u>를 할 수 있음 	<input type="checkbox"/> 범위 명확화(§4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의 <u>세율경감, 세액감면, 세액공제,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(지방세 감면)</u>을 할 수 있음

□ 개정내용

- 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
- ② 팔호로 표현된 규정을 단순 열거규정으로 전환하여 해석 명확화
- ③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이 포함하는 범위 명확화

□ 적용요령

-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(부칙 §1)